

# 어항과 어장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수산업의 가치증진



이 승 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I. 들어가며

어장과 어항은 어촌을 유지·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어장은 어업생산공간으로서 어촌소득 중 어업소득을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그리고 어항은 수산물을 어업생산공간으로부터 소비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출발점이자 어업인이 생산공간으로 이동하는 출발점이다.

이와 같이 어장과 어항은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두 공간은 수산정책의 수립과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는 핵심대상이다. 어장과 어항에 공공투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생산공동체인 어촌계의 구성원과 면허어업인에게 어장의 배타적 이용권을 주어진다. 그리고 어업인에게 어항의 우선 이용권도 주어진다. 이러한 배타적 이용권과 우선적 이용권은 두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수도 있다. 즉 어촌계원과 면허어업자가 어장과 어항의 각각 기본적 기능 측면에서 이용할 경우에 다양한 이용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과연 어장과 어항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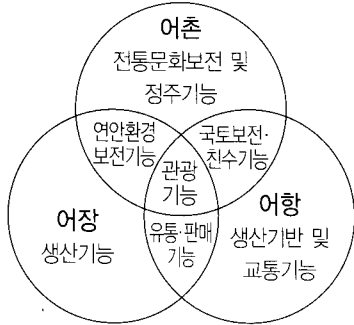
어장의 생산기능으로서 부가가치 창출과 어항의 생산기반시설로서 부가가치 창출 이외의 잠재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두 공간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이 수산업의 가치 제고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어촌의 기능과 역할

### 1. 어촌의 기능

어업에 종사하고 생활하는 어가들로 구성된 바닷가의 촌락인 어촌은 생활공동체로서 수산업을 생계 유지의 주된 수단으로 하는 곳이다. 생산행위에 있어서 다른 국토공간보다 상대적으로 공동체적 특성이 강한 어촌은 생활과 생산활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은 어촌, 어장과 어항의 기능이 상호보완적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어촌 경제의 활성화는 바다와 어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가능하다. 어촌은 전통



〈그림 1〉 어촌, 어장과 어항의 기능

보전 및 정주기능, 연안환경보전기능, 관광기능과 국토보전 및 친수 기능 등을 가지고, 어장은 생산기능, 연안환경보전기능과 관광기능 등을 가지며, 어항은 생산기반조성 및 교통기능, 유통·판매기능, 관광기능과 국토보전 기능을 가진다.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기능은 이용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보전의 대상으로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과 보전을 상호 인식할 때 국토의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

어촌, 어장과 어항의 공통적 기능인 관광기능은 바다와 어촌의 지속 가능한 관광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장의 서식지와 산란지로서 기능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전제하여야 하며, 어촌의 정체성은 전통문화 보전의 전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촌의 주거지와 어항은 해안의 경관과 친환경적인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기능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가가치를 생산함에 있어서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 2. 어촌의 역할

### 가.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 어촌

어촌은 도시와 다르게 생활의 장과 생산의 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중심에 있다. 즉 어촌은 사회성과 공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촌지역은 사회적 조건과 공간적 조건을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어촌의 가치는 커질 것이다. 특히 여건의 변화로 사회적 조건인 생산과 생활조건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어촌의 공간적 조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촌의 우수한 공간적 조건으로부터 수산물의 생산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의 생산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활조건도 교육과 의료 등의 서비스 부족에 의한 낙후된 생활조건 개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으로 소득의 상승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생활조건이 나아질 경우에 어촌은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자리를 잡아 갈 것이다. 쾌적한 어촌 생활공간의 가능성을 고려한 어촌개발에 관한 정책수립이 매우 필요하다.

### 나. 도시인과 어업주민의 교류공간으로서 어촌

국토의 일부분인 어촌은 어촌주민의 생활터전으로 역할을 하여 왔기 때문에 국토의 다른 공간보다 도시민의 생활과 유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어촌과 관련된 자원이 어업인 중심으로 개발·이용되므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이고 도시민에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촌을 도시주민과 어촌주민의 교류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대부분의 어촌 관련 자원은 어촌주민의 권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촌주민과 교류하여야 도시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도시주민이 어촌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수산물 생산과 관련한 체험활동과 어촌의 문화와 전통의 체험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포함되는 수산물 어획과 채취행위는 수산업법에서 어업인 이외의 일반인에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어업인의 참여가 필요하며, 후자도 어촌

주민과 도시주민이 어촌에서 교류를 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체험활동과 결합하여 도시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하다. 즉 어촌에서의 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탁 트인 바다, 자연 경관, 해양테포즈 등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어촌을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 다. 바다자원 이용과 보전의 주체로서 어촌

어촌은 바다와 관련한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소득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것은 어촌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다. 어촌주민들은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할 때 어촌주민의 소득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어촌의 가치는 증가될 수 있다. 바다와 관련한 자원의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엔 어촌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므로 어촌주민이 이러한 사항을 깨닫고 있다면 바다와 관련한 자원을 이용하고 보전하는 주체는 어촌이 가장 적격이다.

최근 들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정주지(eco-village) 조성과 역사·문화적 보전을 통한 인간을 중시하는 환경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어촌은 개발과 보전을 통한 전통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어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회복을 통한 야생생물과의 공존을 위한 안정된 생태계를 보전한다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수준의 생태계를 고려하여 야생생물의 서식에 적합한 공간의 연속성과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도 어촌이다. 즉 연안과 갯벌 등에서 서식하는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을 유지·보전에 어촌주민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어촌관련 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어촌주민이 느끼고 어촌 관련 자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 Ⅲ. 새로운 어촌의 수요

#### 1. 웰빙공간으로서 어촌

소득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 경영자도 국민과 소비자의 이러한 욕구에 부응한 정책수립과 상품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삶의 질 향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는 웰빙(well-being)이다.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웰빙족이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웰빙족의 특성은 자연 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여행, 레저, 스포츠 등을 통한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며, 동시에 슬로우 푸드와 유기 생산물 등을 섭취한다.

이러한 웰빙족의 특성은 누구나 삶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다. 연안은 웰빙을 추구하기 적합한 공간 중의 하나이다. 도시주민의 생활공간은 웰빙조건을 쉽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공간이다. 그래서 도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것으로 웰빙의 일부분을 충족시킨다고 위안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진정한 웰빙은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 후각, 청각, 촉각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자연 친화적인 생활양식으로부터 오감의 웰빙을 누릴 수 있다. 어촌은 갯벌과 청정바다에서 유기 수산물을 생산하고, 어메니티가 뛰어난 공간이다.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도와 갈매기 소리 등은 귀를 즐겁게 하는 공간이다. 또한 자연과 접촉할 수 있어 순응적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이다. 이와 같이 어촌은 천혜의 웰빙공간이다.

#### 2. 미래 트렌드의 안성맞춤 공간으로서 어촌

기업의 성장은 소비자의 수요에 적합한 재화와 용역

을 생산하여 제공할 때 가능하다. 소비자의 수요는 사회의 미래 수요 트렌드와 상관관계가 높다. 미래의 소비자 시장구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요변화의 동인은 인구구조의 변화, 글로벌화, 가치관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환경과 자원의 지속 가능성, 사회구조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미래 트렌드는 기업,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심사이다. 왜냐하면 지구의 생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구의 생존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의 지속 가능성과 관계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촌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주요한 수요변화의 동인 중 가치관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은 문화(culture), 레저(leisure), 건강(health), 어메니티(amenity), 친환경(friendly environment)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어촌은 문화, 레저, 건강, 어메니티, 친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종래의 어촌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미래 트렌드를 기초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주공간으로서 어촌, 생산공간으로서 어장, 생산기반시설로서 어항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 IV. 어장과 어항의 연계와 수산업의 가치 제고 방안

##### 1. 어장과 어항의 연계

어장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이라고 「수산업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면허어업은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어장은

어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어업의 생산공간이다.

어항은 「어촌·어항법」 제2조에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어항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의시설, 그리고 이들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으로 구성된다.

어장과 어항의 연계는 기본적 기능인 생산기능과 생산기반 기능은 물론이고 관광기능을 고려할 경우에 어장과 어항의 가치가 높일 수 있다. 관광기능은 어장과 어항 이용자의 범위를 어업인 위주로부터 지역주민, 나아가 외지 방문객으로 확대시킨다. 어항의 기능시설 중 수산물 시장, 수산물 유통장, 수산물 직매장 등은 어업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관광객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다시 말하면 어업인이 어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리고 복지시설, 문화시설,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지역특산물판매장, 생선횃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휴게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어항편의시설은 어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어항시설이다.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활동과 수산물 양륙 혹은 판매 활동으로 어장과 어항의 기본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 어항이 친수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경우에는 어장과 어항의 또 다른 형태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어업인과 소비자로서 관광객의 교류공간으로서 어항의 역할을 확대할 경우에 어장 또한 수산물 생산공간의 기능이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어항은 소비자인 관광객이 어장에서 어업체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출발하는 공간의 역할과 정보발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어항의 새로운 역할은 어장의 다양한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 2. 수산업의 가치 제고방안

### 가. 수산업의 법적 정의와 가치

「수산업법」 제2조에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을 수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수산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인 어업, 어업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인 어획물운반업, 그리고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으로서 수산물 가공업을 포함한다.

수산업의 정의에 따르면, 수산업의 가치는 어업의 부가가치, 어획물운반업의 부가가치, 수산물가공업의 부가가치로 구성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 레저, 건강, 어머니티, 친환경에 대한 수요는 수산업의 기반인 어촌, 어장, 어항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잠재적 가치 창출은 수산업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은 당연하다. 즉 수산업의 가치 제고방안은 어장과 어항을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의 검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 나. 수산업의 가치 제고방안

#### 1) 어장과 관광을 연계한 수산업의 가치 제고

##### 가) 생태관광·교육 공간으로서 어장 활용

어업인의 생산공간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어장은 수산물의 채취 혹은 포획행위에 대해서는 어업인의 배타적 이용권이 주어지는 공간이다. 이와 같이 어장을 수산물 생산공간으로서 어업인에게 배타적 이용을 허용하는 수산업법의 규정을 제정한 것은 어장에 대한 다른 수요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생산공간으로서 어장에 대한 활용만으로 어업인이 만족하는 그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수산자원을 포함한 바다 생물자원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산

물 생산공간으로서 어장의 활용 이외의 다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어장에는 다양한 어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다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어장은 어업체험공간, 생태관광공간, 바다 생물 교육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업체험관광, 어장생태관광, 바다 생물 교육 등은 청소년 중심의 관광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관광, 학습체험 등이 어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어장을 활용한 체험관광과 학습체험 등은 어업인과 관광객의 교류가 이루어져 양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관광은 어업 외 소득은 물론이고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소비시장 확대에 기여한다. 소비자는 먹거리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과 관광객의 교류를 통한 신뢰구축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수산물 직거래를 증가시켜 수산물 유통단계를 단축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 나) 레저공간으로서 어장 활용

어장은 해양레저활동 공간으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바다낚시, 스킨 스쿠버, 레저 보트 활동, 해수욕 등을 포함한 해양레저 활동은 어장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어장은 해양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어장에서 양식어업과 마을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장에서 활발한 해양레저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어장에서 해양레저활동이 어업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양 레저 관광객이 어장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 내곡 어촌계, 영덕 대진 어촌계 등은 마을어장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스킨 스쿠버 솜이 어촌계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어촌계는 마을어장에서 스킨 스쿠버 활동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어촌계가 마을어장에서 스킨 스쿠버 활동을

허용할 경우에 어촌계는 스킨 스쿠버숍이 지급한 어장 이용료인 직접소득뿐만 아니라 스킨 스쿠버의 숙박, 식사, 수산물 구입 등 간접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특성에 따라 어업인과 해양레저 상품 개발자가 협의하여 어장을 생산공간과 해양레저공간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할 때 어장의 가치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어항과 관광을 연계한 수산업의 가치 제고

가) 레저공간으로서 어항 활용

어선의 정박과 수산물의 양륙 등은 어항의 주요한 역할이다. 재난으로부터 어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는 어항의 기본시설로서 매우 중요하다. 방파제는 다양한 레저활동이 수행 가능한 기본시설이다.

또한 어항 내 공간은 정온수역으로서 재난으로부터 어선을 보호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어항 내 유희공간은 레저공간 혹은 레저활동의 지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촌·어항법의 시행령 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설정 및 제19조 어촌관광 시설의 범위를 근거로 어항의 유희공간을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및 윈드 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항의 유희공간을 레저공간으로 활용하면, 어항의 기능은 변하지 않고 어촌의 중심공간인 어항의 방문객은 증가한다. 이러한 방문객 증가는 어항에서 양륙되는 수산물 수요를 증가시켜 수산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어항 유희공간의 효율적 이용은 어항의 회전율을 높여 어항의 투자효과를 증가시킨다.

나) 친수공간으로서 어항 활용

어항은 바다와 육지를 연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는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친수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어항의 대부분은 친수공간으로서 역할은 미미하고, 어업생산기반시설과 수산물 유통시설로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어항은 우수한 경관조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사

적·문화적 자원과 사람 등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즉 어항은 지역 수산물, 어촌문화, 우수한 경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우수한 친수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항의 기본시설인 방파제, 물양장 등을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도시주민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항의 기능시설 중의 하나인 수산물 위판장, 판매장 등의 유통시설은 어항의 어메니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어촌·어항법 제19조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관광 안내소 등 관광객 편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횃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 이용을 위한 시설,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등을 어메니티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복합공간조성으로 어항의 어메니티를 높여 미항으로서 친수공간으로 변모할 때 어항은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다.

3) 어장·어항의 효율적 연계

가) 개방을 통한 어장과 어항의 연계

수산업의 가치 제고의 목적은 어촌 활성화이다. 어촌의 폐쇄성은 어촌 활성화의 저해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수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촌의 개방이 필요하다. 특히 어촌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장과 어항의 개방을 통한 수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어촌주민이 개방적 사고를 갖게 하여야 한다.

어장과 어항은 어업생산과 생산기반시설로의 활용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또 다른 수요에 부응한 활용이 가능하다. 즉 어장과 어항의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어업생산과 생산기반으로부터 창출되는 가치 이외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잠재적 가치는 어장과 어항의 여러 가지 기능을 상호 연계하면, 잠재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 어장의 수산물 생산기능과 어항의 친수공간 기능을 연계하거나 어장의 레저활동 기능과 어항의

레저기반 기증을 연계하여 어장과 어항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특화를 통한 어장과 어항의 연계

어장의 생태적 환경, 지형적·지리적 특징이 서로 다르다. 또한 어항도 어항의 위치, 어항의 경관, 어항의 시설 등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어장과 어항의 고유성은 서로 차별화를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고유성을 활용한 독창성을 만들어낼 경우에 차별화를 통한 어장과 어항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어장의 고유성을 어항에 연계하거나, 어항의 고유성을 어장과 연계하여 잠재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도 있다. 또한 어장과 어항의 고유성을 결합하여 잠재적 가치를 배가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유성은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어장과 어항의 연계를 통한 가치창출을 위하여 어장과 어항의 차별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기본계획은 어장과 어항을 생산공간에서 나아가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공급시장으로 변화시킬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 권역화를 통한 어장과 어항의 연계

어장과 어항의 일대일 대응을 통한 연계는 고유한 자원이 있을 경우에 다른 어장과 어항과의 차별화를 통한 독과점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어항이 없는 어촌이나 어장의 생산성이 낮은 어촌의 경우에 어장과 어항의 일대일 대응을 통한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장과 어항의 일대일 대응을 통한 연계공간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어장과 어항의 권역화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어장과 어항의 권역화는 어장과 어항의 연계는 물론이고 어장과 어항의 인근 지역의 자원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적 조건을 갖춘 해수욕장과 어항을 연계함으로써 해수욕에 필요한 편

의시설을 어항의 배후공간에 시설하여 해수욕장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편의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어항의 배후부지의 이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체험과 수산물의 가공공간으로서 해수욕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즉 해수욕장이 많고 오징어가 많이 생산되는 동해안의 경우에 오징어를 어항에서 활복하여 해수욕이 이루어지지 않는 봄, 가을, 겨울에 해수욕장을 오징어 건조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V. 마치며

수산업법의 정의에 따르면 수산업의 가치는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활동, 운반, 가공 등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산업의 가치는 수산물의 생산공간인 어장과 수산물을 양육하는 어항의 공간이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때 커질 것이다.

어장과 어항의 고유 기능인 수산물 생산, 운반과 관련한 부가가치는 물론이고 생산공간과 생산기반시설에서 관광기능이 연계될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수산업의 생산과 관련한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어장과 어항을 수산물 생산과 운반 등의 기능에 관광기능 추가한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하면 수산업의 가치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어장과 어항에서 어업체험, 생태관찰, 바다레저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수산업의 가치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차후 검토할 사항이지만, 어장과 어항을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수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어장과 어항에 대한 어업인의 배타적 이용권이 어장과 어항의 자원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배타적 이용권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열린 사고로 정책수립과 어촌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